

안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정 2016. 10. 20. 훈령 제658호
일부개정 2019. 11. 15. 훈령 제704호
일부개정 2022. 12. 30. 훈령 제739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되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인사부서”란 청원경찰의 채용 등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복무총괄부서”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속부서”란 청원경찰이 소속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청원경찰의 정수) 소속부서별 청원경찰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정수의 조정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무의 신설 또는 종료, 행정조직의 변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수를 증원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의6에 따른 당연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의 재정여건 및 해당 부서의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정수를 신규로 추가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책정목적, 책정인원, 시 재원,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경찰 신규 채용) 청원경찰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자격, 채용절차, 채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청원경찰 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채용자격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주소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신분증) 시장은 청원경찰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복무) 청원경찰의 복무는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감독 등) ① 소속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 및 복무에 관하여 지휘·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감사 및 복무 총괄부서에서도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청원경찰 복무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총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복착용)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재직관리 등) ① 인사부서는 청원경찰을 채용한 때에는 인사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직 중인 청원경찰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 또는 퇴직한 청원경찰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근무시간 등) ① 청원경찰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은 직무의 성질,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근무일, 점심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부서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현업근무 등) 소속부서의 장은 현업부서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출장 및 비상근무) 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그 밖에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일지라도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청원경찰은 지체 없이 출근하여 소속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5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청원경찰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8까지의 규정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16조(보수 및 수당 등)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 관계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제17조(포상) 시정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청원경찰에게는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① 청원경찰의 징계는 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따르며, 징계사건은 안양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삭제 <2019. 11. 15.>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훈령 제70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훈령 제73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안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 ④ 「안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별표 <2022. 12. 30. 훈령 제739호> 참조]

- ⑤ 생략

[별표] <개정 2022. 12. 30.>

청원경찰 정수표(제3조 관련)

(단위: 명)

구 분	정 수
계	39
본 청 소 계	11
총 무 과	7
안 전 정 책 과	2
문 화 관 광 과	2
의 회 소 계	1
의 회 사 무 국	1
사 업 소 소 계	25
평 생 학 습 과	3
만 안 구 도 서 관	8
동 안 구 도 서 관	4
공 원 관 리 과	6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4
구 소 계	2
만 안 구 소 계	1
행 정 지 원 과	1
동 안 구 소 계	1
행 정 지 원 과	1